

규제자유특구의 「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0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」(안) 행정예고

1. 제정 이유

- 실증특례 관리를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된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중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제외하고 별도 고시 조치
- *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

2. 주요 내용

-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대상(안 제1호~3호)
 - (대상특구) 울산 암모니아 병커링 특구,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
 - (시험·검사기관) 규제 소관부처와 사전협의된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(4개) 중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~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(3개)
-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기한(안 제4호)
 -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규제 소관부처 등의 보완 요구 시 보완 요구기간 동안 지정기한 연장
- 재검토 기한(안 제5호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4. 의견 제출

-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. 08.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(특구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-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 - 방문·우편 : (30121) 세종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
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 (☎ 044-204-7222, 7073)
 - 전자우편 (이메일) : tud000@korea.kr

붙임 :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(안) 전문 1부

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-00호

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08. 00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기관명 :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

가. 소재지 : (27738)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

나. 업무내용 :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등의 시험, 검사 및 관련 사항(중·대형 선박용 Truck to Ship(TTS) 병커링 실증)

다. 해당특구 : 울산 암모니아 병커링 특구

라. 지정일자 : 2026. 00. 00.

2. 기관명 : 한국기능식품연구원

가. 소재지 : (13488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 파크 A동 102호

나. 업무내용 :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등의 시험, 검사 및 관련 사항(미등재 고시형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,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)

다. 해당특구 :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

라. 지정일자 : 2026. 00. 00.

3. 기관명 : 한국식품과학연구원

가. 소재지 : (16001)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

나. 업무내용 :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등의 시험, 검사 및 관련 사항(미등재 고시형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,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)

다. 해당특구 :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

라. 지정일자 : 2026. 00. 00.

4. 지정기한 :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5. 재검토기한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<제2026-00호, 2026. 00. 00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